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6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

### 세무 및 법률정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계좌도 대상 포함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스

[출처: KICPA, <https://www.kicpa.or.kr>]

## 개요

## 개요

1.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이 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 평가 전문가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2. 위원회는 외부 연구결과, 가치평가 실무현황, 한국과 해외 자본시장의 추세, 글로벌 경제상황 및 실무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검토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러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7일)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이 가치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3자 평가 전문가가 수행한 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가치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가이드스는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므로 이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에 있는 내용과 다른 접근방법 또는 결과가 더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 또는 결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의 사용 또는 인용 여부는 이용자가 판단하여야 하며 이 자료의 내용을 사용 또는 인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발표일부터 적용되며, 향후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이던스 배경

## 1. 가이던스의 배경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가치평가 전문가로 활동하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평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연구 및 심의를 한다.

위원회는 유럽 국가의 공인회계사단체에서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2022년 6월에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를 발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자본시장을 고려하여 시장위험 프리미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장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견해가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외부에 의뢰한 연구결과, 가치평가 실무 현황, 한국과 해외 자본시장의 추세, 글로벌 경제상황 및 실무 전문가와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총체적 접근방식(look-at-everything approach)을 채택하고 있다.

## 추정결과

## 2.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추정 결과

**위원회는 다음 발표 전까지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전년과 동일한 7%~9%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위원회가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시장위험 프리미엄 연구는 설문조사 MRP, 역사적 MRP, 내재적 MRP, 재무정보제공업체의 MRP, 성숙시장의 MRP에 국가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여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추정한다. 2023년 시장위험 프리미엄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중요한 변동이 존재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외부 연구결과 외에 총체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고려한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결정 요인은 대표적으로 위험회피와 소비선호, 경제적 위험의 예측 정도,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기업정보의 정확성, 유동성과 현금흐름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 격리 의무가 해제되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으나 물가, 금리,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변동, 국제 전쟁의 장기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상승시키는 변화도 존재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쇄되어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하향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여타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총체적 접근방식에 따라 면밀히 분석하면서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측정방법

[별첨1] 시장위험 프리미엄 측정방법

시장위험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이하 'MRP')은 위험투자에 대한 대가로 무위험수익률을 초과하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MRP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하 'CAPM')과 같은 자본비용을 추정하는 모형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forward-looking 개념에 기반하므로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기대를 반영한다.

(1) MRP의 정의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이용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용, 세후 타인자본비용, 회사의 목표자본구조 등의 구성요소를 먼저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변수는 모두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으므로 각 구성요소 들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 가정 및 추정이 사용된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을 계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세후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시장가치로 가중평균하는 것이다.

이 중 자기자본비용은 주식의 기대수익률로 결정된다. 기대수익률은 관찰이 어려운 항목이기 때문에 위험을 기대수익률로 전환하는 CAPM을 많이 사용한다. CAPM은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무위험이자율, 시장위험프리미엄, 주식베타 등 세 가지 투입 변수를 사용한다.

$$E(R_i) = r_f + \beta_i [E(R_m) - r_f]$$

$E(R_i)$  = 주식의 기대수익률  
 $r_f$  = 무위험이자율  
 $\beta_i$  = 시장에 대한 주식의 민감도  
 $E(R_m)$  = 시장의 기대수익률

MRP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완전히 분산 투자되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의 차이로 계산된다.

(2) MRP의 측정방법

MRP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과 표본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MRP 추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역사적 MRP**

MRP는 미래현금흐름에 대응되는 할인율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대치라는 특징을 가진다. MRP는 미래의 기대치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과거자료이다. 역사적 MRP는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주식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계산한 후, 무위험이자율을 차감하여 MRP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역사적 MRP 추정을 위하여 과거 자료를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주가 자료가 존재하는 최초 일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이보다 짧은 추정기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평균적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 더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면 더 최근 값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정기간이 짧아지면 표본수의 감소로 표본오차가 증가하여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 내재적 MRP**

역사적 MRP는 과거 데이터에 기반하여 소급적으로 MRP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미래 지향적 MRP 추정이 목표라면 평균회귀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한 역사적 MRP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내재적 MRP를 적용하는데 이는 현금흐름할인(DCF) 모형에 기반한 MRP, 디폴트 스프레드에 기반한 MRP 등이 있다.

**● 성숙시장의 MRP에 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

역사적 MRP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주식시장의 이력이 짧거나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려운 신흥시장의 경우 MRP 추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신흥시장이 성숙시장에 비하여 평균수익률과 변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을 때 성숙시장의 MRP에 국가위험 프리미엄(Country Risk Premium) 등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FAQ

**[별첨2]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 FAQ**

이 FAQ는 한국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이 FAQ에 포함된 내용은 가이드선스의 일부가 아니므로 가이드선스를 인용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이 FAQ를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이 가이드선스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가?**

이 가이드선스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가이드선스의 시장위험 프리미엄 추정결과를 반드시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위원회가 채택한 총체적 접근방식이란 무엇인가?**

위원회가 채택한 총체적 접근방식이란 특정 접근방법에 국한한 분석이 아니라, 외부에 의뢰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결과, 통계자료 및 이를 가공한 지표, 가치평가 실무 현황, 한국과 해외 자본시장의 추세, 글로벌 경제상황 및 기타 관련 요소 등을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체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국가의 공인회계사 단체도 유사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3. 재무정보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장위험 프리미엄과 이 가이드선스의 시장위험 프리미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가?**

이용자가 재무정보제공업체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해당 재무정보제공업체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4. 시장위험 프리미엄은 매년 변경되어 발표되는가?**

위원회는 매년 시장위험 프리미엄에 대해 검토를 수행하여 가이드선스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다만 시장위험 프리미엄 추정결과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한 시장위험 프리미엄을 발표할 수도 있으므로, 시장위험 프리미엄이 매년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원회는 연 중에 시장위험 프리미엄의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발표할 수 있다.

**5.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RP) 연구결과는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와 동일한 시점에 매년 발표되는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실무에서 한국의 SRP를 고려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의뢰하여 한국의 SRP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SRP는 MRP와는 달리 가이드선스가 아닌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연구 진행상황에 따라 제공 여부 및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장위험 프리미엄 가이드선스 발표 시점에 참고 목적으로 지난 SRP 연구결과를 다시 안내할 수 있다.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

**(참고) 한국의 기업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연구결과**

**(2022년 6월 28일)**

이 자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참고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여러 위험 프리미엄 중 자본시장 전체와 관련된 시장위험 프리미엄 외에 개별기업에 적용되는 기업 특유위험 프리미엄(Firm Specific Risk Premium)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업의 규모위험 프리미엄(Size Risk Premium, 이하 SRP라 한다)은 기업 특유위험 프리미엄 중 하나이며 실무적으로 상황에 따라 고려되기도 한다.

SRP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 분위수별(3분위, 5분위, 10분위 등)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나타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 위원회는 실무에서 한국의 SRP를 고려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에 의뢰한 한국의 SRP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기로 하였다

[규모위험 프리미엄 : 3분위수]

규모	주1) 평균	시가총액(단위:백만원)			
		Min	Max	Median	Mean
Mid	-0.26%	922,834	544,116,848	11,103,155	2,238,130
Low	0.60%	336,121	859,621	556,629	543,750
Micro	3.35%	63,685	333,630	212,443	216,340

규모	주2) 순자산 장부금액(단위:백만원)					
	Min	Max	Median	Mean	Q1(1분위)	Q3(3분위)
Mid	123,757	275,948,016	1,074,278	주3) 7,170,951	551,593	주3) 3,712,136
Low	53,082	3,454,653	337,508	512,961	188,064	589,531
Micro	28,757	1,243,463	137,782	203,946	75,267	241,805

- 주1) 여러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평균값을 단순 평균한 것임
- 주2) 규모분위수별 순자산 장부금액 관련 내용은 실무적용시 참고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주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주3) 특정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예외적으로 커서 3분위보다 평균이 더 크게 나옴

[규모위험 프리미엄 : 5분위수]

규모	주1) 평균	시가총액(단위:백만원)			
		Min	Max	Median	Mean
1분위	-0.25%	1,851,312	544,116,848	4,187,573	17,793,014
2분위	0.00%	721,685	1,824,793	1,067,545	1,127,037
3분위	0.44%	402,051	718,622	543,751	546,965
4분위	1.82%	236,816	401,845	305,786	314,292
5분위	4.16%	63,685	234,320	162,566	163,406

규모	주2) 순자산 장부금액(단위:백만원)					
	Min	Max	Median	Mean	Q1(1분위)	Q3(3분위)
1분위	197,605	275,948,016	1,846,502	주3) 11,419,987	831,889	주3) 6,859,108
2분위	61,252	5,032,291	641,216	1,050,385	270,464	1,295,141
3분위	53,081	2,617,104	337,012	426,536	187,750	499,074
4분위	43,622	1,243,462	203,695	292,375	125,056	460,925
5분위	28,757	760,165	120,254	157,634	69,299	189,056

- 주1) 여러 방법론에 따라 산출된 평균값을 단순 평균한 것임
- 주2) 규모분위수별 순자산 장부금액 관련 내용은 실무적용시 참고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주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주3) 특정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예외적으로 커서 3분위보다 평균이 더 크게 나옴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계좌도 대상에 포함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상자산계좌도  
대상에 포함

국세청은 '23.6.1.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23.6.30. 신고 기한)

□ 신고의무자

- ('22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2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였다면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 ('23년 신고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거주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3.1.1.~2022.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2.1.1.~2022.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신고대상

-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신고해야 함
- (해외가상자산계좌)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
  -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
  - 20억원 이하: 해당금액 x 10%
  - 20억원 ~ 50억원: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x 15%
  - 50억원 초과: Min(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x 20%, 20억원)
- 미(과소)신고금액 50억 원 초과시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국세청은 '23.6.8.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신고를 안내하였음.  
(12월 결산법인 주주는 '23.6.30. 신고기한)

□ 신고대상자

-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구분	과세요건
일감몰아주기	① 수혜법인의 <b>세후영업이익</b> 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b>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b>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③ 수혜법인의 <b>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b>
일감떼어주기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b>특수관계에 있는 법인</b> 으로부터 <b>사업기회를 제공</b> 받고 해당 부분의 <b>영업이익</b> 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b>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b> *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 '22.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 중 일부 완화**

- 중소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까지 확대 적용**
-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
  - 사업부문별 과세를 위해서는 회계 구분 관리 등의 요건(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분류) 충족
- 지배주주 등이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증여이익에서 **배당소득을 공제**하는데, 그 **배당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940, 2023.06.15)

(사실관계)

- A는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질의법인에 2012.5.16.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질의법인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해오다, 2021.12.31. 정년퇴직하였으며, 2022.1.1. 질의법인과 계약직 근로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후 정년퇴직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1.12.31. 정년퇴직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완료, '22.1.1. 4대보험 신규 가입

(질의내용)

- 2021.12.31. 정년퇴직 후, 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再)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2022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질의요지)

- 실질 소유자인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회신)

-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직·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제4항의 실지명칭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에 해당하고 당해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동 조문에 따라 실제 소유자인 내국법인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임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0866, 2023.05.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 개인고객 대상 인도주식 직접투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에서 발급하는 FPI(Foreign Portfolio Investor) CAT II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음
- 상기 추진업무 관련 사전검토로,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규정과 달리 원천지국인 인도의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요지)

- 조세조약과 달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가 된 경우, 동 세액이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사업자가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한 경우 영세율 요건 충족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0, 2023.06.07)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 대가를 동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 동 국내지사가 외국법인 등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외국법인 등이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차감하고 외국법인등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